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8
----------	-------

제출년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관련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광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관광진흥센터와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제2호)
- 나.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다. 관광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8조 ~ 제9조)

- 관광진흥센터의 업무 범위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분석·연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안 제22조)

- 위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명(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2명(소관국장 및 과장),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재협약 적정여부를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동의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평가대상 조문 : 제13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평가결과 :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

구청장 방침	조치 사항
<신 설>	<p>제1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u></p> <p>② <u>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u></p>

마. 2015년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심의보류

- 보류이유 : 안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꼭 명시해야하는지 확인하고, 제9조제2항의 내용(별도의 장소에 설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 안 제9조의 관광진흥센터 설치 위치를 조례에 꼭 명시해야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관광진흥센터의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유 발생 시 조례개정 절차가 뒤따르는 등 행정 효율성 저해가 예상되는 바, 안 제9조를 삭제함

심의회 상정안	조치 사항
<p>제9조(위치)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u>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u> <u>마포한강푸르시오 상가 1층에 설</u> <u>치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u>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u> <u>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u> <u>소에 설치할 수 있다.</u></p>	<p><삭 제></p>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속 가능”을 “지속가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관광상품”을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앞의 “제3장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를 제18조(종전의 제7조) 앞으로 하고,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제4장 종합관광안내소”로 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3장 관광진흥센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진흥센터 설치) 구청장은 구의 관광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7.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

무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기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3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③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업무)”를“(안내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 또는”을 “법인이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센터는 안내소로 본다.

제12조 앞의 “제4장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제23조 앞으로 하고,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홍보”를 “관광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필요한 부서의 국장”을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15조)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6조)제3호 중 “일신상의 이유로”를 “개인 사정으로”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중 “이를 개최”를 “개최”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19조) 본문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등”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에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u>총 칙</u>	제1장 <u>총 칙</u>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u>지속 가능한</u>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 ----- ----- <u>지속가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생략)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관광상품</u> 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u>관광상품, 관광기념품</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u>그 밖에</u> ----- -----
<u><신 설></u>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
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
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
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
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
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
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
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3장 관광진흥센터

제8조(관광진흥센터 설치) 구청
장은 구의 관광 관련 사업을 체
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
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

<신 설>

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7.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신 설>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기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 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신 설>

록 한다.

제13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③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신 설>

· 기피·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신 설>

<신 설>

제3장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종합관광안내소

제1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4.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제12조 (생략)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 2. (생략)
-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4. (생략)
-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② (생략)

제20조(안내소의 업무)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 법인
이나 -----.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센터는 안내소로 본다.

제5장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제2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24조(기능)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 3. 관광홍보 -----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제25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
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기타 필
요한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
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명

2. 3. (생략)

④ ⑤ (생략)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음)

③ -----

-----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

----- 사람을 -----
-----.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 3.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의 임기) -----

----- 전임위원 -----
-----.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 2. (생략)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7조 (생략)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생략)

제21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1. · 2. (현행과 같음)

3. 개인 사정으로 -----

제2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최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

제3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32조(의견의 청취 등) ① -----

----- 인정할 -----

-----.

② -----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
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
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
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외부전문
가 등-----
----- 지급할 -----
--.

제33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안 제6조
- 비용발생 총계 : 45,350천원(2015. 세출예산 기준)
- 산출내역
 - 편성목(통계목)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 도심 속 도보관광 활성화 지원 : 20,000천원
 - 생생문화재사업(양화진근대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 18,750천원
 - 편성목(통계목) : 일반보상금(기타 보상금)
 - 광흥당 한국문화관광 활성화 통역 및 인솔자 보상금 : 1,600천원
 - 외국인관광객 U-벨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 5,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센터 운영과 사업 소요예산은 별도 특별회계 및 기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으로 운용
-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은 2015년 세출예산 기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하현웅
연락처	02-3153-8362